

월요 광장

스승의 날을 돌아보면서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실장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배움이 있는 곳에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이외에 앞서 살아간 사람이나 그길을 먼저 간 사람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점에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산대사(1520~1604)는 '눈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踏雪野中去), 밭길을'

을 어지러이 걷지 말라(不須胡亂行)'고 했다. 작은 일상의 활동에도 스승의 역할이 있음을 환기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업의 상황은 어떠한가? 매우 좋

은 직업으로 여겨지는 대학 교수는 전국에 7만8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대학교수 이외에도 2만6000명의 시장강사가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24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중등학교 교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으며, 평균 연령이 41세이고, 1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전국에 17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여성이 절대 다수(79.3%)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교사도 1만5000여 명이 교육현장에서 수고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근속 연수나 연령이 낮다. 보조교사는 약 4만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이 대부분이고 근속연수가 매우 짧은 편이다. 유치원 교사는 6만 명 정도로, 거의 전부(99%) 여성이며 평균 연령도 30세 이하로 조사되었다.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문어여학 강사는 전국에 30만 명 정도 종사하고 있으며,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 등을 가르치는 방송교사는 17만 여명이 일하고 있다. 직업 관련 기술·기능이나 컴퓨터를 강의하고 있

는 강사는 5만5000명, 피아노나 미술 등 예능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도 15만5000명이 협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여러 방면에서 스승의 길을 가고 있는 인원은 총 13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임금을 중간 수준(중앙값) 기준으로 보면 대학교수는 월 5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초·중등학교 교사는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학원 강사들의 급여는 대학의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월 150만 원 수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사에 비하여 절반 정도이다. 특히 보조교사는 월 100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어, 짧은 근속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편이다.

25세에서 64세의 대출 이상 전일제 근로자 평균 급여를 100%로 보았을 때, 초·중등 교사들은 OECD 국가에서 평균 82~90%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130%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사의 임금 수준이 높다.

하지만 최근 임금(초임)을 놓고 불평과 최고 임금의 차이가 2.8배로, OECD 평균 1.6배보

상식의 배반? 상식과의 동거!

법조칼럼



김혜민
변호사

흔히 법의 공정하지 못한 적용, 또는 잔인한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정발 법은, 던컨 J. 와츠의 책 제목을 끌어다가 말하자면 '상식의 배반'이 난무한 영역일까?

며칠 전 필자는 약 2년 반에 걸쳐서 진행했던 소위 경계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경계선 재판은 쉽게 말해 갑 소유 토지를 물이 권한 없이 침범하여 침유하고 있을 때, 갑은 물에게 지상 건물 철거청구 및 해당 침범 토지의 반환청구 나아가 물이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고, 물은 이 경우 대부분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갑에게 해당 부분의 소유권이전등 기청구를 하는 구조가 된다.

위와 같은 소송에서 갑 측의 소송대리를 맡았는데, 물이 갑의 토지를 침범한 면적은 총 13㎡에 불과했다. 갑은 소송 초기부터 침범 부분은 13㎡ 중에서 현재 공터인 6.5㎡만 갑에게 돌려주면 그동안 못 받은 임료 상당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나머지 부분의 건물 철거청구 및 반환청구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했다.

그러나 물은 해당 부분을 그동안 본인의 땅으로 알고 점유했는데 어떻게 이제서서 돌려주느냐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 심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갑의 입장에서는 물뿐만 아니라 물을 이전의 전 점유자와도 그동안 수차례 토지 경계선 침범 문제가 공론화됐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기 때문에 물이 무조건 물랐다고 하는 것을 그저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1심 재판부는 건물을 존재

하지 않는 부분, 즉 갑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면서 물에게 큰 손해가 없는 부분만 갑이 반환받고 해당 부분의 임료 상당부당이득을 돌려받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원고 일부 승소)

갑으로서는 이웃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점을 감사하며 별도로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물이 먼저 항소를 하기에 갑도 뒤이어 폐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갑을 소송대리한 저는 갑의 기본 입장은 몇 차례 밝혔지만, 물은 역시 조정의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물의 건물이 위치한 부분까지 다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변론 종결 직전에도 다시 한 번 서로 간 원만한 합의를 제안해 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변론이 종결됐다.

원만한 합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꺼냈던 것은, 소송을 빨리 끝내고자 함도 아니요, 재판이 일방적으로 갑에게 너무나 불리해서도 아니었다. (이미 소송은 장기화돼 있었고 재판의 유·불리는 억지주장을 해야 할 정도로 불리한 상황도 아니었다) 다만 그야말로 소송이 '이웃 간의 소송'이기에 조정이

될 경우 실제 진실은 차치하고 앞으로도 조금은 더 너그럽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법의 장대를 들이댄 결과가 모든 상황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전 항소심 판결 선고일, 감사하게도 오히려 갑이 계정 부분 전체를 돌려받고 해당 토지 지상 물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동안 못 받은 임료 상당부당이득도 전부 받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원고 전부 승소)

A라고 볼 수 있고 B라고 볼 수 있을 때는 '경험칙'도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되는데 경험칙은 달리 말하면 '상식'이다. 재판에서 폐소한 사람에게 그 판결은 여지없이 '상식의 배반'이 되고 말 것이고 반면에 재판에서 이긴 사람에게 그 판결은 '상식과의 동거'에서 비롯된 정당한 판결이 될 것이다.

누군가가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한 번만 더 숨을 고르고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돌아보기를 권한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의 상식이란 것이 '나만의' 상식인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상식인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대폭 강화된다

을 실천하는 농가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사람과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매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한 결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4만3000 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1183만3000t을 생산·공급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년 증가해 전문판매장, 학교급식 공급업체, 백화점·마트의 친환경농산물 코너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업체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어 우리 식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대부분 민간인증기관이 담당하고, 사후관리는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인증과 사후관리를 분리시킴으로써 인증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원에서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약 50%(지난해 말 기준 6만6000 농가/8만 2000ha)를 차지해 '친환경농업의 1번지'로

합하고, 인증대상을 수단들과 사람이 직접 먹지 않는 비식용 유기기공품까지 확대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유기·무항생제축산물 포함)을 소분하여 포장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 처리해 포장하는 사업자인 제포장 취급자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해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을 제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다. 만약, 제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제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는 인증기준 위반 농가 등에 대해 인증취소처분을 다수 적발하여 형사입건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입체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 결과 이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이 높아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근간이 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올해 6월 2일부터 확대·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식품으로 이원화된 유기식품 법령을 통합화해 돼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입학사정관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예를 들어 모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 중 하나인 '지역균형선발전형'이라는게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성적 1, 2등 학생이 추천됐다. 그 이유는 학교당 추천 인원이 2명인데이는 자연히 성적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모 대학의 학교장추천전형 역시 고등학교에서 내신성적 1, 자연적 1명씩만 추천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

도 힘들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입학사정관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예를 들어 모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 중 하나인 '지역균형선발전형'이라는게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성적 1, 2등 학생이 추천됐다. 그 이유는 학교당 추천 인원이 2명인데이는 자연히 성적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모 대학의 학교장추천전형 역시 고등학교에서 내신성적 1, 자연적 1명씩만 추천 할 수 있도록 돼있고,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

기고



장맹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며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라는 단어이다. 여기에 '먹을거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게 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말이 자주 쓰이게 됐다.

이렇게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97년 12월 유기농산물 등 환경농산물에 대한 표시신고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3년 정도 시행한 결과 표시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나,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2001년 6월 폐지했다.

정부는 그 대신 2001년 7월에 친환경농

의 '진리·자유' 전형 역시 1단계에서 교과성적으로 3배수를 뽑기 때문에 각 학교 1등이 아니면 지원하기 힘들도록 돼있다. 한마디로 말이 진리, 자유 입학사정관제의 성적으로 먼저 뽑아버리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돼버리다면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본래 취지를 잊고 말 것이다. 대학들이 이 애초 취지를 놓게 해석해서 학생을 선발했으면 한다.

▲이충한·광주 남구 구동

결국엔 성적 위주... 입학사정관제 취지 무색

대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장래 자녀가 대학에 가야 하는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대입시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없다.

요즘 대입시의 학부는 뛰어들고 해도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다.

입학 사정관제는 학생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뽑는다는 게 원래의 기본 취

社說

반쪽난 5·18 기념식 그게 국민통합인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외연으로 또다시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 여야 정치권,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 주관으로 치른 기념식과 별도로 주인공인 유휴과 5월 단체, 진보정당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5·18 묘역에서 기념식을 가진 것이다.

특히 기념식에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의 참석이었지만 반쪽 기념식에 따라 빛이 떠졌다.

5·18 기념식이 과정으로 끝난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합창으로 결정하면서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로,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이유로 들었다.

참으로 졸렬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33년간 추모곡으로 널리 불려온, 5·18의 연장 선상에 있는 승고한 노래다. 굳이 일부 단체의 행사까지 들먹이고 주먹을 쥐고 흔든다는 건 역시일 뿐이다. 애당과 광주시민, 각계는 물론 여당의 중진들마저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추모곡 지정을 촉구하지 않았는가.

박 대통령이 이날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한다"며 "그 의미를 되새겨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비추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수춘 보훈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추모곡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게 민주정부이자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살인 진드기, 효율적 방역대책 세워라

최근 제주도에서 70대가 '작은 소 침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혈성 혈소판 감소증후군(SFTS)과 유사한 증세로 숨졌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현실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당국의 방책은 너무 안이하다. 제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문제의 농장에서 소들이 불어있는 진드기 떼를 떠내고, 살충제를 뿌리는 게 고작이었다. 전남 등지에서도 대규모로 키우고 있는 소에서 작은 곤충인 진드기를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갈 때 모기야, 살충제를 뿌리거나 곤충이나 농약을 퍼는 게 고작이었다. 제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자 문제의 농장에서 소들이 불어있는 진드기 떼를 떠내고, 살충제를 뿌리는 게 고작이었다. 전남 등지에서도 대규모로 키우고 있는 소에서 작은 곤충인 진드기를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갈 때 모기야, 살충제를 뿌리거나 곤충이나 농약을 퍼는 게 고작이었다. 진드기로 인한 감염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불안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역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無等鼓

오월의 신록이 질어가고 있다. 매년 이맘 때면 수령 400여년의 이팝나무 노거수(老巨樹)를 보기 위해 순천시 흥전면 평촌리 농소마을과 승주를 평중리 평지 마을을 찾는다. 19일 현재 농소 이팝나무는 부분적으로 고사했지만 온나무 가득 하얀 꽃을 피우고 있다.